

항목: 학생

발행: 2013/8/21

번호: **A-240**

제목: 학생 퇴교 사유

페이지: 1 중 1

변경 사항 개요

본 규정은 학생 전학 및 퇴교와 관련 유효한 사유들을 명시한다. 본 규정은 2000년 9월 5일자 교육감 규정 A-240을 대체한다.

변경내용:

- 전학과 퇴교를 구분 (p. 1, §§ I-II).
- “퇴교 사유 입증”이라는 제목의 이전 섹션을 삭제하고 각 퇴교 케이스 별 사유 입증 요건을 첨가함(pp. 1-3).
-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전학, 퇴교 및 졸업 지침에 근거하여 퇴교 및 전학 근거 입증 서류 보관 및 기록요건 명시 <http://schools.nyc.gov/RulesPolicies/GraduationRequirements/default.htm> (p. 1).
- 부모가 자녀를 다음 학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시킬 것을 원하지 않는 한 입학하는 해에 5번째 생일을 맞는 아동은 반드시 유치원에 다녀야 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의 유치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 변경 (p. 1, § II.D).
- 입학 당해 5번째 생일은 맞는 아동의 부모는 자발적으로 자녀의 유치원 등록을 거부하고 이듬해에 자녀를 1학년에 입학시키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; 이러한 아동은 유치원에서 퇴교하고 다음 학년도에 반드시 1학년으로 입학하여야 함 (p. 1, § II.D).
- 현 교육청 조직을 반영한 직위 명칭 갱신 (p. 1, § II.B).
- 각종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성을 높임.
- 조직들의 이름이 갱신되었음.

개요

본 규정은 2000년 9월 5일자 교육감 규정 A-240을 대체한다. 본 규정은 뉴욕시 공립 학교 전학 및 퇴교에 관한 정책을 규정한다.

머리말

학생은 일단 한 번 학교에 등록하면 본 규정에 정의된 적법한 사유에 의해서만 학교 학적부에서 제거될 수 있다. 전학은 학생이 교육청 산하의 한 학교나 프로그램에서 교육청 산하의 다른 학교나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. 퇴교란 학생이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. 이 때 학교는 모든 퇴교 사유를 명시하고 전학, 퇴교, 졸업 ("TDG") 지침에 의거해 졸업관련 서류(해당될 경우) 등의 퇴교의 근거가 되는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. 본 지침은 <http://schools.nyc.gov/RulesPolicies/GraduationRequirements/default.htm>에서 검색할 수 있다:

I. 전학

- A. 학생이 뉴욕시의 한 공립학교나 프로그램에서 다른 학교나 프로그램(고등학교 대안 프로그램(GED) 포함)으로 옮겨가면 전에 다니던 학교 학적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B. 학생이 주법에 의거하여, 그리고 홈스쿨링 중앙 오피스(Central Office of Home Schooling)의 승인을 받아 공립학교에서 홈스쿨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전에 다니던 학교 학적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II. 퇴교(DISCHARGES)

학생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퇴교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다음에 열거한 이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이다. 이 때, 모든 퇴교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해당 학교에 학생의 졸업예정일 이후 6년간 보관해야 한다.

- A. 뉴욕시 밖으로 이사 간 학생은 퇴교될 수 있다. 학생이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, 학교는 학생의 새 주소(거리, 시, 주)는 물론 학생이 새로 전학한 학교명을 알아서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. 만일 학생이 다른 국가로 이사 간 경우 학교는 학생이 이주한 도시 및 국가명을 알아내고, 미국 외의 국가로 이사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학부모가 직접 작성하고¹ 담당 교직원이 증명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. 이 때 모든 관련 서류는 TDG 지침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학생의 기록에 함께 보관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.
- B. 학교의 출석담당 교사나 기타 담당 교직원의 조사 후에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퇴교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의 퇴교는 TDG 지침에 의거하여 조사 결과 서류 제출 및 현장 지원 센터(Field Support Center) 출결 수퍼바이저(Attendance Supervisor)의 승인이 난 후에 가능하다.
- C. 학생이 교육청 소속이 아닌 학교나 프로그램, 즉, 가톨릭 학교나 사립학교, 또는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(IEP)에서 추천한 비 교육청 기숙학교 또는 기타 학교나 프로그램에 입학한 것이 확인되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퇴교조치 될 수 있다. 이러한 사유로 학생을 퇴교시킬 때 학교는 TDG 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이 새로운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수할 책임이 있다.
- D. 금학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만 5세가 되는 아동으로서 현재 유치원에 등록된 아동의 학부모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다음 학년도에 바로 1학년에 입학시키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 아동은 유치원에서 퇴교되며, 반드시 다음 학년도에 1학년으로 등록해야 한다. 이 때, 학부모의 유치원 퇴교 요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, 보관해야 한다.

¹ 본 규정에서 "학부모(parent)"란 용어가 사용될 때, 이는 학생의 부모(들) 또는 보호자(들), 또는 학생의 양육이나 보호를 책임진 기타 모든 사람이나 기관을 지칭한다.

- E. 학생이 기숙 기관이나 기타 뉴욕시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뉴욕시 외곽의 시설(예,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명령한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담당실(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) 시설, 병원, 위탁 양육시설 입소 등)에 입학한 것이 확인되면 퇴교될 수 있다. 이러한 사유의 퇴교는 반드시 교육청 담당직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TDG 지침에 의거하여 관련 입증 서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.
- F. 현재 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으로서 해당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만 4세가 되는 아동의 부모는 자녀를 자발적으로 유아원 퇴교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때, 학부모의 퇴교 요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, 보관해야 한다. 또한 해당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만 4세가 되는 아동으로서 학교에 20일 연속 결석한 아동은, 학교에서 TDG 지침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통보조치를 취한 후에 퇴교될 수 있다.
- G.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학생은²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퇴교할 수 있다.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쳤으나 20일 연속 학교에 결석한 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적절한 통보조치를 취한 후에 퇴교될 수 있다.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사유 모두, 학교에서는 플래닝 인터뷰 양식(Planning Interview Form) 및 플래닝 인터뷰 절차 메뉴얼(Planning Interview Procedures Manual)에 나온 절차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미 받지 않은 이상 만 21세 이전에 복학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문을 문서로 받아야만 한다.
- H. 16세 또는 17세 학생은 학부모 동의서와 함께 풀타임 고용증명서가 있을 경우, 풀타임 취직을 위해 퇴교할 수 있다. 17세 이상의 학생은 군에 입대한 경우 퇴교할 수 있다.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사유 모두, 학교에서는 플래닝 인터뷰 양식 및 플래닝 인터뷰 절차 메뉴얼에 나온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. 또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미 받지 않은 이상 만 21세 이전에 복학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문을 문서로 받아야만 한다.
- I.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4년제 대학 프로그램에 입학한 경우 TDG 지침에 의거하여 퇴교될 수 있다.
- J. 만 21세 이상의 학생은 만 21세가 되는 학년도가 종료되면 퇴교될 수 있다.
- K. 사망한 학생은 관련 서류로 입증절차를 거친 후 퇴교될 수 있다.
- L. 장애 학생은 만 21세가 되는 해, 또는 유치원을 제외하고 최소 12년 학교생활을 마친 후 아무 때나 뉴욕주 대안 졸업장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교할 수 있다. 이러한 자발적 퇴교를 택한 학생은 반드시 만 21세가 되기 전에 복학할 권리를 알리는 서면 통지문을 받아야 한다.
- M. 고등학교 학력 인증서(GED)를 받은 학생은 TDG 지침에 의거하여 퇴교될 수 있다. 고등학교 학력인증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만 21세가 되는 학년도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 계속 다니거나, 복학하여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학업 할 수 있다.
- N.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완수한 학생은 TDG 지침 및 고등학교 학업정책 참고 지침서(High School Academic Policy Reference Guide)에 의거하여 해당학교를 졸업생으로서 퇴교될 수 있다. 학교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 외의 타교에서 이미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퇴교될 수 있다.

² 각 학년도의 공식 시작일은 7월 1일이다.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17세가 되는 학생은 해당 학년도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 다녀야만 한다.

- . 만 17세가 되는 학년도를 마친 일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교육감 규정 A-443에 의거하여 교육장 공청회를 거쳐 퇴학조치 된 학생은 퇴교될 수 있다.

III. 문의

본 규정에 대한 문의 연락처:

뉴욕시 교육청

전화:
212-374-6095

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(Office of Safety
and Youth Development)

52 Chambers Street – Room 320
New York, NY 10007

팩스:
212-374-5751